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여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한 조항들로 인해 현행 조례의 전문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,
- 조례의 전문개정과 함께 운전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계급별로 여비의 지급을 구분 (안 제3조)
- 다. 근무지내 출장시 운전원을 포함한 여비지급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함 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, 「공무원여비규정」(대통령령 제18673호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5. 1. 7부로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간 본 조례와 중복된 사항과 국가공무원과 불일치되는 용어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중 꼭 명시해야 할 부분만 일부 개정안에 규정 하였고, 기타사항은 대부분 준용토록 하므로 조례를 간소화한 흔적이 있으며
- 총 5개조와 부칙에 2005. 4. 1부터 적용토록 규정
- 개정안 제1조(목적)중 적용 공무원을 “지방공무원 및 그 임용후보자”로 포괄적으로 규정 된 것을 “사하구 공무원”으로 단순화 하였고
- 안 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여비)는 현 조례 제3조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는 규정 제3조를 준용하되 “구청장”을 구분(제1항) 별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는 규정 제18조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고, 운전원의 여비지급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(준용규정)는 현행 조례 제4조 중 폐지된 「국내여비규정」 「국외여비규정」을 삭제하고 통합된 「공무원여비규정」으로 수정하였고
 - 관련 인용 법중 변경된 법령명칭과 개정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으나

-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”란 말은 문법상 준용할 수 있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제1-6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조로 한정 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, 규정 제9-16조, 19조-21조, 23조, 25조, 26조, 28-30조 등도 사안에 따라 준용되어야 할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제30조(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)인데 이런 사항을 준용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초래 되게끔 되어있음
 -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때 제5조(준용규정) 본문을 “— — 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되 아래 각호는 다음과 같다”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- 결론적으로 일부 문구수정 할 것외 다른 조항들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및 타 법령과 상치 되는 것 없이 현실에 맞게 잘 개정 되었다고 사료됨